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253호 2022. 3. 10.(목)

【조 례】

○ 옥천군조례 제3080호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옥천군조례 제3081호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옥천군조례 제3082호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옥천군조례 제3083호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4
○ 옥천군조례 제3084호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옥천군조례 제3085호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고 시】

○ 옥천군 고시 제2022-15호 조령2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기행계획 고시 ..32
○ 옥천군 고시 제2022-16호 성암1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기행계획 고시 ..34
○ 옥천군 고시 제2022-17호 두릉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기행계획 고시 36
○ 옥천군 고시 제2022-20호 옥천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38

【기 타】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8호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39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9호 옥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52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0호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64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1호 옥천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75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2호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예고 83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3호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91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4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03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5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예고 ..108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6호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16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7호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21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080호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지 외 지역에서 해설하는 경우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지원)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지 외 지역에서 해설하는 경우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 지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081호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순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를 “조례는 범죄”로, “위하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로, “옥천군 소재”를 “옥천군”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천군 자율방범대”란 옥천군 지역 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2. “옥천군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방범대의 대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

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범대”를 “옥천군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군수”라고”를 ““군수”라”로 한다.

제4조 중 “연합대”를 “옥천군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범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순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옥천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범죄 ---------- ---------- ---------- 위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 옥천군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옥천군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옥천군 지역 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천군 자율방범대”란 옥천군 지역 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2. “옥천군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방범대의 대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임무) 옥천군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5. ---------- “군수”라 ----------
제4조(조직구성 및 운영)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따른다.	제4조(조직구성 및 운영) ---------- 옥천군 자율방범연합대----------.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신 설>	6. 방범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

	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082호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04조 제1항과”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및”으로,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업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부서명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자치행정과	1	○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보건지소·보건진료소간 근무지정	보건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 지도사, 연구사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센터내 근무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소내 근무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소내 근무지정	체육시설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5	○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근무지정	평생학습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부서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보직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복지정책과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2. 의료급여증 재발급신청서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주민복지과	1. 장애인등록 업무 가. 장애인 등록 나. 장애인 재등록 및 카드제작 신청·배부 다. 장애인 등급 조정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재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3.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신청 및 교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
재무과	1.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자진신고납부 처리 및 정리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2. 납세증명서 발급 및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3.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징수법 제13조, 제32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4. 지방세 납세 관리인 지정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5. 지방세징수, 체납처분	지방세법 제133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6.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부서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경제과	1. 정기·임시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제35조제2항
	2. 정기·임시시장 사용허가	같은 조례 제8조
	3. 정기·임시시장 사용자의 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4.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명령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5.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같은 조례 제10조
	6. 사용료의 징수	같은 조례 제13조
	7. 사용료의 감면	같은 조례 제14조
	8. 사용료의 반환	같은 조례 제16조
안전건설과	1. 군도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66조, 제94조
	2. 농어촌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0조
	3.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기타 부담금 강제징수	도로법 6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4조
	4. 군도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도로법 제40조제3항
	5. 도로불법행위 단속	도로법 제27조, 제75조, 제77조
	6.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 (신규허가 제외)	도로법 제61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7, 군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도로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허가처리과	1.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환경과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 가. 쓰레기봉투 판매 나. 대형폐기물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3.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 .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 주민지원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제19조까지

부서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교통과	1.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사항(수수료 징수 포함) 가. 벽면 이용 간판 나. 공연간판(2개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다. 지주이용간판 라. 벽보(2개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마. 전단(2개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바. 창문이용 광고물 사. 돌출간판 아. 전기이용 광고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 자. 애드벌룬(2개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차. 현수막(2개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2. 광고물 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수수료징수 포함) ※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의2까지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정비명령 나. 현장정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4. 옥외광고물의 허가표시의 취소 ※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건행정과	1.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가.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나.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 제9항
친환경농축산과	1. 마을공동급식 지도·감독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1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및 ---------- 읍·면장---------- ----------.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② (생 략)	제2조(위임사항) ① ---------- 사업소장----------. ② (현행과 같음)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083호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입소·이용 대상자) ① 시설의 입소·이용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옥천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

3.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

③ 입소 시 신청·접수 순으로 입소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날 접수 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소·이용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입소·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정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퇴소 또는 입소·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퇴소 또는 입소·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입소·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이용하거나 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6. 제5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소·이용자가 장기요양 1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시설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과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설정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9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084호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1시간”을 각각 “1시간 30분”으로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 영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1 회 주 차 권		1일주차 (노상주차장 제외)
	최초1시간30분 까지	1시간30분 초과후 30분마다	
주 간 (08:00~19:00)	무 료	500원	7,000원
월 정기권	40,000원		
야 간 (19:00~익일 08:00)	무 료		

1. 상기 요금은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 2.5톤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5인승이상 45인승미만 승합, 2.5톤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 요금의 2배

나. 45인승이상 승합, 11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 요금의 3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생 략) ③ 노상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 요금에 그 주차 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3.(생 략) ④·⑤(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현행과 같음) ③ ----------. 1. ---------- 1시간30분을 ---------- 1시간30분에 ----------. 2.·3.(현행과 같음) ④·⑤(현행과 같음)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085호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

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사업 범위) 이 조례에서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푸드 관련 활동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2. 옥천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3.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복지 기반 구축

4. 옥천푸드 홍보 기반 구축

5. 그 밖에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추진단 설치 및 운영

제7조(추진단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 구성 및 역할)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활동조직과 해당분야 전문가·기관을 연결해주는 활동가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조직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추진단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추진단 운영) ①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9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⑤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13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추진단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추진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옥천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관련 자문위원 및 기관·민간단체 대표
3. 지역 주민의 대표
4. 농업·농촌·공동체·복지 등 옥천푸드 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사업계획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추진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되어 있던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

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시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옥천군 고시 제2022-15호

조령2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조령2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10.

옥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조령2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마을 박물관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기록하고 주민들의 자부심을 북돋아주며, 주민공간사업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삶의 질과 생활여건 증진
3. 사업비: 300,000천원
   (지방비 300,000)
4. 주요사업내용
   가.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일원
   나. 세부사업내용
      1) 지역경관개선: 마을 박물관 조성, 새재이야기길 조성
      2) 지역역량강화: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스토리텔링 개발, 작은음악회, 청춘학교 운영 등
5. 사업시행자: 옥천군수 /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6. 사업기간: 2021년 ~ 2022년(2년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사용 등의 명세서: 게재생략
8. 관계서류 및 편입토지 등의 명세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730-3297),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043-730-2560)에 비치된 기본계획서 열람 가능

【별첨】

조령2리 마을만들기사업 세부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기능별	공 종	단위	사업량	사업비	비고
총 사 업 비				300,000	
지역 경관 개선	소 계			219,153	
	• 마을 박물관 조성	식	1	202,719	
	• 새재이야기길 조성	식	1	16,434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80,847	
	•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식	1	7,656	
	• 스토리텔링 개발	식	1	7,392	
	• 작은 음악회	식	1	8,734	
	• 청춘학교 운영	식	1	17,545	
	• 부대비용 (설계, 공사감리비 등)	식	1	39,520	

옥천군 고시 제2022-16호

성암1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성암1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10.

옥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성암1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주민수요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가족 같은 마을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3. 사업비: 300,000천원
   (지방비 300,000)
4. 주요사업내용
   가.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암1리 일원
   나. 세부사업내용
      1) 지역경관개선: 금구천 보행로 조성
      2) 지역역량강화: 안전캠페인 행사 등
5. 사업시행자: 옥천군수 /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6. 사업기간: 2021년 ~ 2022년(2년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사용 등의 명세서: 게재생략
8. 관계서류 및 편입토지 등의 명세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730-3297),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043-730-2564)에 비치된 기본계획서 열람 가능

【별첨】

성암1리 마을만들기사업 세부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기능별	공 종	단위	사업량	사업비	비고
총 사 업 비				300,000	
지역 경관 개선	소 계			251,654	
	• 금구천 보행로 조성	m	120	251,654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48,346	
	• 안전캠페인행사	회	2	5,060	
	• 부대비용 (설계, 공사감리비 등)	식	1	43,286	

옥천군 고시 제2022-17호

두릉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두릉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10.

옥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두릉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주민공간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삶의 질과 생활여건 증진
3. 사업비: 300,000천원
   (지방비 300,000)
4. 주요사업내용
   가.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두릉리 일원
   나. 세부사업내용
   1) 기초생활기반확충: 마을공동이용시설
5. 사업시행자: 옥천군수 /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6. 사업기간: 2021년 ~ 2022년(2년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사용 등의 명세서: 게재생략
8. 관계서류 및 편입토지 등의 명세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730-3297),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043-730-2558)에 비치된 기본계획서 열람 가능

【별첨】

두릉리 마을만들기사업 세부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기능별	공 종	단위	사업량	사업비	비고
총 사 업 비				300,000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소 계			254,420	
	• 마을공동이용시설	식	1	254,420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45,580	
	• 부대비용 (설계, 공사감리비 등)	식	1	45,580	

옥천군 고시 제2022-20호

옥천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옥천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 3. 10.

옥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옥천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2. 사업의 위치: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644번지, 644-1번지

3. 사업의 목적

❍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아동 및 청소년 돌봄 등 사회적서비스 공급 공간 제공

❍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공익적 공간 창출

4. 사 업 비: 450,000천원(국비 225,000, 군비 225,000)

5. 주요사업내용: 유휴시설(마을공동작업소) 165.38㎡ 리모델링 1식

구 분	세부사업	사업비(천원)	사업량	비고
합계		450,000		
건축비	내외부 공사 등	409,759	리모델링 공사 1식	
제경비	건축설계 등	40,241	리모델링 설계 1식	

6. 사업시행자: 옥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2021. 2. ~ 2022. 12.

8. 관계서류 등 명세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730-3295)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8호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3. 제안이유

○ 효행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계획수립, 효행장려사업 및 지원, 효행 우수자 표창 등의 구체적이고 폭넓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효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효행장려사업 및 지원(안 제5조)

○ 효행수당의 지급, 신청 및 방법 등(안 제6조, 제7조)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8조)

○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안 제9조)

5. 근거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옥천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도대상자”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7. “3세대 이상 효도가정”이란 효도대상자와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8.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군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조성 및 협력체계 수립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한 시책

제5조(효행장려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가정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효행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효행수당의 지급) ①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급신청일 기준 3세대 이상 효도가정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하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2. 3세대 이상 효도가정의 구성원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② 효행수당은 3세대 이상 효도가정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으로 하고,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행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행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효행수당 지원신청서(제7조 관련)

지급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				
지 급 계 좌	예 금 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 입 일	비 고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행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옥천군수 귀하

본인은 효행수당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 조사서

○ 조사내용: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옥천군의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조 사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제7조 관련)

연번	주 소	1대에 관한 사항			2대에 관한 사항			3대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							

관련법령 발췌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9호

옥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유재목 의원)

2. **발의의원** :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3. **제안이유**

○ 옥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 목적(안 제1조)

○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결정(안 제2조, 제3조)

○ 지원금(안 제4조)

○ 협약 체결(안 제5조)

○ 지원금의 사용(안 제6조)

○ 환수 등(안 제7조)

5.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제26조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으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② 「노인복지법」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지원금) ① 군수는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연 1회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1인당 80,000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협약 체결) 군수는 군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이하 “업소”라 한다) 대표자와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업소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③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제3조 관련)

<table>
<tr><td rowspan="5">신청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성 별</td><td>□ 남 □ 여</td></tr>
<tr><td>주민등록번호
※ 시설입소여부 확인 시 필요</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구 분</td><td colspan="4">[ ] 생계급여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td></tr>
<tr><td colspan="2">노인복지시설 입소 여·부</td><td colspan="3">[ ] 여 [ ] 부</td></tr>
<tr><td colspan="6">「옥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td></tr>
<tr><td>담당공무원
확인사항</td><td colspan="5">
<table>
<tr><th>확인내용</th><th>확인결과</th><th>비 고</th></tr>
<tr><td>옥천군 거주</td><td>여 · 부</td><td></td></tr>
<tr><td>65세이상 노인</td><td>여 · 부</td><td></td></tr>
<tr><td>수급자 또는 차상위</td><td>여 · 부</td><td></td></tr>
<tr><td>노인복지시설 입소</td><td>여 · 부</td><td></td></tr>
</table>
※ 해당사항에 체크
</td></tr>
<tr><td colspan="6">확인자 직위 : 성명 : 읍면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td></tr>
</table>

[뒷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은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나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 확인 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옥천군 거주 여부 및 변동사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65세 이상 여부 확인,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 등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목욕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관련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0호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발의의원** : 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배움터가 되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성과평가 · 관리 등(안 제11조)

5. 근거법령

○ 「교육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옥천군(이하“군”으로 한다), 옥천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으로 한다), 학교와 마을,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학생동아리”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을 말한다.
4.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란 학교와 마을의 필요에 의해 공동으로 실현되는 축제, 수업, 체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5.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써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및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학생,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동아리,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 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4.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

공동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을교육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평생학습원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

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성과평가·관리 등)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군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1호

옥천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김외식 의원, 이의순 의원

3. 제안이유

○ 옥천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안 제4조)

○ 작은학교사업 및 지원대상자 (안 제5조,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작은학교사업 관련 우대 기준 신설(다른 조례의 개정)

5. 근거법령

○「교육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며 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추이

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옥천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작은학교사업)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따른 빈집 입주 우대

2. 월세 지원 사업

3.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4. 군 자체 일자리사업 노동자 선발 시 우대

5.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작은학교사업 지원대상자)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군의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그 자녀가 작은 학교에 재학중인 세대로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학교사업 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관계 행정기관·각급 학교·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 시 「옥천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옥천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작은학교사업 지원대상자

관련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노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2호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발의의원 :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3. 제안이유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임무(안 제1조, 제2조)

○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안 제3조, 제4조)

○ 지도 및 감독, 지원중단(안 제5조, 제6조)

○ 표창(안 제7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옥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임무) ① 이 조례는 옥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6.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7. 그 밖에 의용소방대 관계법령에 따른 임무

제3조(지원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

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용소방대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7조(표창)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3호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의순 의원)

2. **발의의원** : 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3. 제안이유

○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안 제5조)

○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규정(안 제6조)

○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규정 구체화(안 제11조)

5.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5, 제65조의3, 제65조의5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로, “농어촌주택”을 “농어촌 주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빈집실태조사) 군수는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을 “법 제65조의6”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료 확인 요청)”을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농어촌정비법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0조(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결정 및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직권 철거 결정을 한 때에는 철거 사유, 자진 철거 기한 등을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61조의2(특정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법 제65조의5제4항 전단에 따른 정당한 보상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제61조에 따라 직권 철거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

인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1조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그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 - 14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유재목 의원)

2. 발의의원 : 유재목 의원 외 7인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2.1.13. 시행)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 근거를 정함

4. 주요골자

○ 의회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비상근무) ①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비상근무) ①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의 견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 - 15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대표 발의자 : 임만재 의원)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외 7인**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22.1.13. 시행)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안 제2조)

○ 비상소집 (안 제3조)

○ 응소자의 임무 (안 제4조)

○ 비상근무 제외자 (안 제5조)

○연락체계 유지관리 (안제6조~제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의회규칙 제 호

옥천군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른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상시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비상소집) ① 의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하거나 발령된 때에는 즉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2조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제6조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상근무 제외자) 의장은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직원를 우선으로 지정하고,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상 소 집 대 상 명 부

1차 : 자기집 전화번호
2차 : 연락가능한집 전화번호

① Code No	② 성명	③ 소속	④ 직위	⑤ 주소	⑥비상연락할곳			⑦ 등청 시간	⑧동사고내용				비고
					1차	2차	파출소		출장	병가	휴가	기타	

※ 1.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지정한 장소(근무상황 카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해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초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

1. 기관명 :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 분		총원	응소대상 인원	응소인원	응소율 (%)	시간별 응소현환			
						1시간 이내		1시간 후 2시간 이내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본부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 하고, 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총괄보고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의　　견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 - 16호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의순 의원)

2. **발의의원 : 이의순 의원 외 7인**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22.1.13.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인용조문변경 (안 제1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옥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 - 17호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김외식 의원 외 7인**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22.1.1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인용조문변경 (안 제1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의회규칙 제 호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옥천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의　　견